

■ 목 차

■ 지평 소식 ■

- 지평 노동팀, 여수·순천상공회의소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기업의 대응방안' 공개세미나 개최..... 1
- 지평 미얀마팀, 일본 동경에서 '미얀마 투자 법제' 관련 세미나 개최..... 3
- 지평, '민법 임대차존속기간 조항의 위헌결정과 시사점' 공개세미나 개최..... 4
- 장윤정 변호사 영입..... 5
- 부산 사무소 강호정, 임방조 변호사 영입..... 6

■ 주요 업무 사례 ■

- 지평, 세아제강을 대리하여 이탈리아 강관업체인 이녹스테크 인수를 위한 법률 자문..... 7
- 지평, 대우인터내셔널을 대리하여 'VNS대우' 합작법인 설립 및 베트남 진출 관련 자문..... 8
- 지평, 한화를 대리하여 캄보디아 쌀 수출 전문업체와의 합작법인 '암루 한화(Amru Hanwha)' 설립 관련 자문..... 9
- 지평,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 관련 법률자문기관으로 선정..... 10
- 지평, 신촌역사를 대리하여 민법 제651조 관련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34)에서 위헌결정 이끌어내..... 11
- 지평, 용산개발사업지역 내 우편집중국 건물의 매매 및 부지 사용에 관한 소송에서 항소인용판결 이끌어내..... 12
- 지평, 서울도시가스를 대리하여 가스시설분담금 분쟁 관련 소송에서 승소..... 13

■ 법률 논단 ■

- [자본시장] 볼커룰(Volcker Rule) 시행에 즈음하여..... 14

- [조세] CFO와 재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2014년 시행 개정 세법.....17

■ 최신 판례 ■

- [노동]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25
- [도산]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28
- [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피보험자 동의를 철회 가부.....30

■ 최신 법령 ■

- [공정거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外.....34
- [금융]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38
- [보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42

■ 단신 ■

- 최승수 변호사, '한국계임법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44
- 김성수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外.....45
- 임성택 변호사,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46
- 이근동 변호사, 안전행정부 고문변호사로 재위촉.....47
- 김영수 변호사, 2013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어 헌법재판소장표창 수여.48
- 박성철, 박호경, 장품, 구나영 변호사 공동논문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위헌성」 '언론과 법' 제12권 제2호에 게재.....49

■ 지평 소식 ■

지평 노동팀, 여수·순천상공회의소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기업의 대응방안' 공개세미나 개최

지평 노동팀과 여수·순천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및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기업의 대응방안' 공개세미나가 2차례에 걸쳐 여수·순천상공회의소(2월 4일 개최)와 부산상공회의소(2월 10일 개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개세미나에서는 지평 순천 사무소 한재철 변호사, 부산 사무소 강호정 변호사의 사회, 김지형 고문변호사의 개회인사로 진행되었으며, 김성수 변호사가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를, 여연심 변호사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뉴시스 - 여수상의, 내달 4일 '통상임금' 설명회(2014. 1. 22.)
- 프라임경제 - 순천·여수상의 "통상임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2014. 1. 22.)
- 뉴스1 - [단신] 여수상의, 통상임금 설명회(2014. 1. 22.)
- 파이낸셜뉴스 - 통상임금 관련 판결 설명회..부산상의, 지평과 공동으로(2014. 1. 22.)
- 세정신문 - 부산상의,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2014. 1. 22.)
- 이뉴스투데이 -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2014. 1. 21.)
- CNB설뉴스 - 부산상의,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의의·기업 대응방안 설명회(2014. 1. 21.)
- 국제신문 - 기업 '통상임금 지침' 해법찾기 분주(2014. 2. 3.)
- 울산매일 - 부산상의, 통상임금 대응 설명회(2014. 2. 4.)

[관련 사진]



개회인사를 하고 있는 김지형 고문변호사



1세션 발제를 하고 있는 김성수 변호사

■ 지평 소식 ■

지평 미얀마팀, 일본 동경에서 '미얀마 투자 법제' 관련 세미나 개최

지평 미얀마팀은 지난 1월 22일 일본 동경에서 일본 10대 로펌 등 우수 로펌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미얀마 투자 법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철, 유정훈 변호사, 장성 수석자문위원/미얀마 현지법인장이 강사로 참여하고, 양영태 대표변호사, 김홍영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일본기업들의 미얀마 진출 러쉬에 따른 법률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은 이미 30여 건의 일본고객들의 업무를 처리한 바 있으며, 본사 미얀마팀과 협력하여 미얀마 관련 자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지평, '민법 임대차존속기간 조항의 위헌결정과 시사점' 공개세미나 개최

지평이 주최한 '민법 임대차존속기간 조항의 위헌결정과 시사점' 공개세미나가 지난 1월 23일 지평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평은 2013년 12월 26일 임대차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51조 제1항 헌법소원사건에서 위헌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채권법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반향이 예상됩니다. 이에 지평은 이번 위헌결정이 갖는 의미와 그 파장을 다루는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개세미나에서는 정광현 변호사가 '헌재 사건의 배경이 된 민사소송의 쟁점, 민사소송에 끼치는 영향과 효과'를, 박성철 변호사가 '헌법소송의 역할 및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사내변호사, 기업과 공공기관의 법무담당자분들과 함께 위헌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및 각종 분쟁에서 헌법소송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임대차 존속기간' 학술회(2014. 1. 20.)

[관련 사진]

1세션 발제를 하고 있는 정광현 변호사



2세션 발제를 하고 있는 박성철 변호사

■ 지평 소식 ■

장윤정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장윤정 변호사)

지평은 2014년 1월 6일 장윤정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장윤정 변호사는 2002년에 주목받는 여성 법조인 2인에 선정된 바 있으며, M&A 분야에서 인천제철의 삼미특수강 인수 자문, GE의 Freechal 투자자문, PJ산업 분할 매각 자문, 조흥투자신탁 매각 자문, LA CHEMISE LACOSTE의 서광산업에 대한 투자 자문, M.DOHMEN KOREA LTD.의 LG Chemical 인수 관련 자문, (주)크라운의 (주)해태 인수 합병 자문, 군인공제회의 STX 중공업 주식 인수 관련 자문, 군인공제회의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 투자 관련 자문 등 다수의 거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증권, 금융분야에서는 Cerberus의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설립 및 해외사채발행, Koro Voltin Fund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청라 외자유치 관련 자문, 판교 테크노밸리 단지 내 이노밸리 건물 신축 관련 PF 등 다수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IP 분야에서는 다수의 상표권 분쟁, 저작권 자문 및 소송(영상저작물, 프로그램 저작물, 각종 캐릭터 저작물, 서체 저작물 등) 등을 수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부산 사무소 강호정, 임방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강호정 변호사)

지평 부산 사무소는 2014년 1월 2일 강호정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강호정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창원지방검찰청, 부산 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조세, 지적재산권, 보건·의료 등의 업무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임방조 변호사)

지평 부산 사무소는 2014년 1월 2일 임방조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임방조 변호사는 바다에 인접한 부산을 중심으로 해상, 보험 및 국제거래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특히 해상사건 중 다수의 선박충돌사고에 있어 외국 및 국내 선주와 그 보험자를 대리하여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해양안전심판절차 및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법원절차를 다년간 수행하였습니다.

선박건조계약에 있어 선급금지급보증 관련 소송 등 선박금융 분야와 선원노동위원회 중재 등 선원 재해보상 분야에서도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건설분쟁, 조세분쟁에도 그 전문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세아제강을 대리하여 이탈리아 강관업체인 이녹스테크 인수를 위한 법률 자문

지평이 세아제강을 대리하여 이탈리아 강관업체인 이녹스테크 인수를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세아제강, 이탈리아 강관社 인수(2014. 2. 11.)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강율리 변호사



서준희 변호사



노충욱 미국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대우인터내셔널을 대리하여 'VNS대우' 합작법인 설립 및 베트남 진출 관련 자문

지평이 대우인터내셔널을 대리하여 베트남 국영철강그룹인 VN스틸, 호치민시티메탈과의 공동출자를 통한 'VNS대우' 합작법인 설립 및 베트남 진출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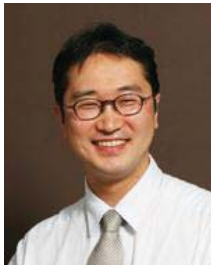
[관련 기사]

- 매일경제 - 자원, 베트남 스크랩시장 진출(2013. 12. 16.)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이상희 미국변호사



BUI Tran Dang Khoa
베트남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한화를 대리하여 캄보디아 쌀 수출 전문업체와의 합작법인 '암루 한화(Amru Hanwha)' 설립 관련 자문

지평이 한화를 대리하여 캄보디아내에서의 영농사업을 위하여 캄보디아 쌀 수출 전문업체와의 합작법인 '암루 한화(Amru Hanwha)' 설립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 한화, 캄보디아 합작법인 통해 글로벌 쌀 시장 진출(2014. 1. 24.)

[담당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설일영 변호사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구상수 공인회계사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 관련 법률자문기관으로 선정

지평이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 관련 법률자문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평은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구조 및 각종 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매일경제 - 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 발행 관계기관 선정(2014. 1. 16.)

[담당 변호사]



강율리 변호사



윤재민 변호사



설일영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신촌역사를 대리하여 민법 제651조 관련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34)에서 위헌결정 이끌어내

지평이 신촌역사를 대리하여 민법 제65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34)에서 위헌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민법의 채권법 영역에서 이번 위헌결정은 이례적입니다. 관련 소송은 지평 헌법소송팀이 수행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건물 임대차 기간 최장 20년 민법 규정 위헌”(2013. 12. 26.)
- 연합뉴스 - 현재 “건물 임대차계약 20년 제한 민법조항 위헌”(2013. 12. 26.)
- 파이낸셜뉴스 - 현재 “건물 임대차 계약 최장 20년 제한은 위헌”(2013. 12. 26.)
- 머니투데이 - 임대차존속기간 20년 제한 조항은 위헌(2013. 12. 26.)
- 법률저널 - 임대차존속기간 20년 제한 ‘민법 651조’ 위헌(2013. 12. 26.)
- 한국일보 - 임대차 기간 최장 20년으로 제한한 건 ‘위헌’(2013. 12. 26.)
- 매일경제 - 건물임대차 20년 제한 ‘위헌’...부동산 외자유치 호재될까(2014. 1. 12.)
- 파이낸셜뉴스 - 현재 ‘건물 임대차 최대 존속기간 20년’ 위헌 결정 영향(2014. 2. 2.)

[담당 변호사 / 지평 헌법소송팀]



이공현 대표변호사



조용환 변호사



정광현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민창욱 변호사



임미경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용산개발사업지역 내 우편집중국 건물의 매매 및 부지 사용에 관한 소송에서 항소인용판결 이끌어내

지평이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을 대리하여 용산개발사업지역 내 서울우편집중국 건물에 관한 건물매수 청구권 행사의 효과(본소) 및 그 부지의 무단점유 여부(반소)에 관한 소송에서 항소인용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원심에서 본소청구 전부 기각, 반소청구 거의 전부 인용으로 의뢰인이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본소청구 거의 전부 인용, 반소청구 거의 전부 기각의 성과(1심 판결 대비 승소 금액 약 435억 원 상당)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정광현 변호사



김태형 변호사



윤성후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서울도시가스를 대리하여 가스시설분담금 분쟁 관련 소송에서 승소

지평이 서울도시가스를 대리하여 DSD삼호와의 가스시설분담금 분쟁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투데이에너지 - 가스시설분담금 분쟁 해결 키 찾아(2014. 2. 6.)

[담당 변호사]



권순철 변호사

■ 법률 논단 ■

[자본시장] 볼커룰(Volcker Rule) 시행에 즈음하여



(법무법인 지평 이은영 변호사 · 미국 Columbia Law School 유학 중)

올해 4월 1일자로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 Prop Trading)를 제한하는 이른바 볼커룰(Volcker Rule)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적용 유예기간이 2015년 7월 21일까지이지만 아직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려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볼커룰(Volcker Rule)은 2008년 서브프라임(Subprime Mortgage) 사태에 대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으로, 미국 오바마 정부가 금융 산업의 근본적인 개혁을 꾀하고자 만든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금융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핵심 조항입니다. 미국은 1930년 대공황 이후 투자은행과 상업은행 등 금융업 간의 상호 진출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기조를 줄곧 유지해 왔지만(Glass-Steagal Act, 1933), 클린턴 정부 시기에 금융기관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여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간의 경계를 없애는 등의 규제완화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Gramm-Leach-Bliley Act, 1999).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자기자본투자(PI), 사모투자전문회사(PE) 등의 자기자본거래를 통하여 고위험, 고수익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금융기관의 부실과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를 초래했고, 정책 실행 10년 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초래한 손실은 고스란히 정부 보조금 형태로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12년 JP모건이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자기자본거래로 62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된 것을 계기로(런던고래 사건, London Whale), 오바마 정부는 은행의 자기자본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금융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볼커룰(Volcker Rule)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볼커룰(Volcker Rule)은 (i) 은행 등이 자기자본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프랍 트레이딩과, (ii) 은행 등이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나 헤지펀드(Hedge Fund)에 투자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프랍 트레이딩의 경우, 은행 이외에 은행지주회사, 그 계열회사 및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금지되는 거래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상품(Financial Instrument)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은행 등이 60일 이내로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은 프랍 트레이딩으로 보겠다는 간주 규정까지 두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채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증권 인수행위(Underwriting) 및 시장조성 관련 행위(Market making related activities), 위험 완화 헤지 행위(Risk Mitigating Hedging Activities)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자문의 일환으로 펀드를 설정, 운용하는 경우 3% 이내에서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 등이 해당 펀드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보증행위 등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펀드 명칭에 해당 은행 등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펀드의 부실화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i) 중대한 이해관계 충돌이 있거나(material conflict of interest), (ii) 고위험 자산(high-risk assets) 또는 고위험 거래 전략(high-risk trading strategies)으로 중대한 익스포져(material exposure)에 노출되는 경우, (iii) 해당 은행 등의 건전성(safety and soundness) 또는 미국 금융 건전성(financial stability of the United States)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금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밖에서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2013년 12월 은행이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행위를 일부 제한하는 금융서비스법안(The Financial Services (Banking Reform) Act, 2013)을 새로이 입법하였습니다. 프랑스 또한 2013년 7월 26일 프랍 트레이딩 등 은행의 위험 투자행위에 대한 울타리 치기(Ring Fencing) 조항을 의무화하여 이를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할 예정이고, 독일도 2013년 6월 7일 은행 등의 예금 수취 업무와 프랍 트레이딩을 분리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승인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유럽연합(EU)도 2014년 1월 29일 프랍 트레이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형은행 규제 방안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볼커룰(Volcker Rule) 시행이 전면화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저하되고 기업과 개인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대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은행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하여, 유사은행업(Shadow Banking)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이에 따른 또 다른 유형의 규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비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프랍 트레이딩과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누려왔던 대형 금융기관들은 펀드에 대한 투자 지분을 줄이고 부동산 투자 비중을 늘리는 등 볼커룰(Volcker Rule) 시행에 따른 대비책에 고심 중입니다. 구체적인 시행 세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볼커룰(Volcker Rule)이 어디까지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단기적인 자금조달(short-term credit creation)보다는 장기적인 금융건전성(long-term financial stability)에 비중을 둔 큰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 등이 투기적인 자기자본거래가 아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금융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인식으로 보입니다.

■ 법률 논단 ■

[조세] CFO와 재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2014년 시행 개정 세법



(법무법인 지평 임승혁 공인회계사 · 구상수 공인회계사)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방향으로 하여, 2014년 1월 1일 개별 세법이 개정되었고 2014년 2월 21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 재무담당자들이 알아야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범위 확대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용역이나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얻은 일정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종전에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보았으나, 개정 후에는 **지배 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도 특정법인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아들이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게 아버지가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될 뿐만 아니라 주주인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영리법인 재산을 유증한 경우 그 주주의 상속세 납세의무

영리법인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종전에는 상속세를 면제받은 영리법인의 주주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가 상속인 또는 그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 영리법인의 상속재산 × 10%) ×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아들이 지배하고 있는 영리법인

에게 주식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경우, 영리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상속세가 면제되지만, 주주인 아들은 지분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합리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법인(이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증여재산가액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초과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 초과 비율"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특수관계법인 매출 ÷ 전체 매출	좌동. 단 중소기업 간 매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매출액 등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에서 제외
정상거래비율	30%	좌동. 단 중소·중견기업은 50%
초과거래비율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15%	좌동. 단 중소·중견기업은 30% 차감
한계보유비율	3%	좌동. 단 중소 중견기업은 10%

4.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은 일정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데, 이러한 가업상속공제의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적용 대상	매출액 2천억 원 이하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원 이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견기업
공제액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70% . 최대 300억 원 한도	가업상속 재산가액 100% . 최대 500억 원 한도
상속인 관련 사전 사후 요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 종사, 상속개시일 이후 10년간 가업 종사 등	상속인 배우자가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도 공제 허용
10년 사후 관리 요건	한국표준산업 세세분류 기준으로 가업에 계속 종사	한국표준산업 세분류 기준으로 가업에 계속 종사
10년 사후 관리 요건	각 사업연도마다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인원 100% 이상(중견기업은 1.2배 이상)	각 사업연도마다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인원의 80% 이상이고,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인원 이상(중견기업은 1.2배 이상)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요건	가업기간 중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자로 재직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자로 재직
상속인의 상속요건	상속인 1인이 가업상속재산 전부상속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되, 유류분 반환청구에 의한 공동상속 허용

5.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인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합산)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증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성년	3천만 원	5천만 원
미성년	1천 5백만 원	2천만 원

6. 법인과 개인 간 금전 대여 과세조정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이자율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 이자율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1억 원 이상 금전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시 적정이자율은 현행 8.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법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상 시가로 대출받은 경우 그 시가를 상증법상 적정이자율로 간주**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7.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제한

개정 전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 또는 과대 대상이 아닌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공급하는 자가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므로**(양수자가 대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8. 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시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추가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및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만 해당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자는 그 지급액의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2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예외 있음) 해야 합니다.

2014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비영업대금 이익의 경우 27.5%)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9.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 등

종전에는 3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득세 최고세율(38%,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1.8%)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의료비 기부금 등은 소득에서 공제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그 지출액의 일정액이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즉 종전에는 공제 금액으로 감소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액이 감소하여 소득이 높을수록(적용되는 세율이 높을수록) 소득 공제로 감소하는 세액이 많았지만, 개정 세법에 따르면 지출액의 일정액이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소득에 상관없이 세액이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10. 양도소득세 증과제도 폐지

종전에는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과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러한 증과세율이 폐지되거나 완화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정 전 세율(지방소득세 별도)	개정 후 세율(지방소득세 별도)
다주택자	2주택 : 50% 3주택 이상 : 60%	다주택자의 주택 수에 상관없이 6~38%
비사업용토지	60%(2013년까지 적용 유예)	2014년 양도분 : 6~38% 2015년 이후 양도분 : 6~38% + 10%
단기보유 부동산	1년 미만 : 50% 1년 이상 2년 미만 : 40%	1년 미만 : 50%(주택은 40%) 1년 이상 2년 미만 : 40%(주택은 6~38%)

*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30% 추가 과세는 10% 추가 과세로 개정

11.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의 배당소득 제외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 또는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2. 무액면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 변경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액면주식 배정 시 취득가액(의제배당)의 계산방법은 “자본금 ÷ 발행주식총수” 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자본금전입액 ÷ 자본전입 시 발생된 주식수**”로 변경함으로써 발행주식 수에 따라 총 의제배당금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13.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범위 조정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신고 조정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특례 대상 자산이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기존 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 동일 업종에 사용되는 것)에 한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특례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액이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였으나, 개정 후에는 **(i)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와 (ii)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IFRS 도입으로 감소된 감가상각비의 25%를 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함으로써 IFRS 도입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였습니다.**

14. 적격물적분할 주식 처분 사후관리 강화

종전에는 분할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서 분할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과세이연 금액이 모두 익금산입되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면 과세이연 금액이 모두 익금산입됩니

다. 예컨대, 분할신설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비율이 50% 미만이 되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세이연 금액이 모두 익금산입될 것입니다.

15.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보완

현행 세법상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은 (i) 독립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할 것, (ii) 분할하는 사업부분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iii)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할 것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분의 요건과 관련하여, 부동산, 주식 등만을 분할하는 경우는 지주회사 설립 등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 요건과 관련하여, 분할사업부분이 승계한 자산(주식 제외) 및 부채의 각각 20% 이하의 자산 및 부채를 이러한 요건의 예외로 추가하였고, 주식은 지주회사의 설립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계할 수 없는 것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16.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축소

종전에는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기간 또는 고용기업과의 특수관계 여부에 상관없이 17%(지방소득세 포함하면 18.7%)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며,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인은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17. 외국인직접투자 조세감면 제한과 축소

종전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의 법인세, 취득세 및 재산세 그리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감면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특정 국가 또는 지역(레바논, 도미니카연방, 과테말라, 키프러스, 세이셸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감면이 배제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감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폐지됩니다.

18. 수동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적용 기준 신설

특정외국법인의 수동소득(주식·채권 보유, 지적 재산권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유보소득 전체에 대해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CFC rule')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는 특정외국법인의 수동소득(특정외국법인이 10%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외)이 5% 초과 50% 이하인 경우에도 유보소득에 그 비율을 곱한 소득에 대해서는 CFC rule이 적용됩니다.

19. 전자문서 인지세 과세 대상 범위 확대

종전에는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도급 위임에 관한 증서에 한하여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작성 분부터는 원칙적으로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 모두의 전자문서가 과세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 최신 판례 ■

[노동]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여연심 변호사 | 임미경 변호사

1. 판결의 요지

단체협약에서 정기상여금에 대해 '① 운전자의 상여금은 입사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월 만 근임금(기본급+연장, 야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1년에 380%를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연 4회 95%씩 분할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 기준일자는 다음과 같다. 1회: 3월 31일, 2회: 6월 30일, 3회: 9월 30일, 5회: 12월 31일 ③ 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고 규정한 경우, 위 정기상여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사실관계

- (1) 피고는 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2007년 9월 이전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퇴직한 상태이다. 원고들은 2007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일 전일근무제로 근무하였고, 2010년 7월부터는 1일 2교대 근무제로 근무하였다.
- (2) 피고는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은 기본시급 외에 하기휴가비, 무사고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만근수당,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수당을 지급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7년 9월부터 1일 2교대 근무제가 실행되기 전인 2010년 6월까지 기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청구하였다.

3. 판결의 의의

- (1)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18일 선고한 2건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고정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즉,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의 경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13쪽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지급조건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합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라는 조건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하도록 노사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고정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아 하기휴가비, 선물비, 생일지원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판결 6~7쪽 참조).

- (2)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정기상여금도 '특정시점 재직 중'이라는 요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부정되는지에 관해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견해는 (i) 정기상여금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판결)에서 위 내용을 실시한 점, (ii)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수당과 차이가 없다는 점, (iii) 특정시점에 재직 중이지 않으면 정기상여금(일부)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명

확하다는 점, (iv)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를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판단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듭니다.

이에 반대하는 견해는 (i) 정기상여금의 경우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매월 지급 시 해당월, 격월 지급 시 2개월분)만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ii) 근무만 하면 특별한 조건 없이 매월 또는 격월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특성상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경우만 지급한다는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iii)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이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라는 개인적 특수성을 근거로 임금지급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하여 '퇴직' 역시 개인의 특수성일 뿐이므로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3) 이와 같이 견해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부산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2나7816 판결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 처음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 중' 요건을 적용하여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하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1월 23일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역시 정기상여금을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4)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지급일 현재 재직 중' 요건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판단 대상이 된 하기휴가비,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정기상여금 등 외의 임금항목에 대해서도 '지급일 현재 재직 중' 지급요건이 부가되어 있는지가 고정성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급요건은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합의나 관행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최신 판례 ■

[도산]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배성진 변호사 | 배기완 변호사

1. 사실관계

자동차판매회사인 甲 회사는 회사분할을 통해 직영승용판매 부분을 신설회사로 이전함. 한편 甲 회사의 직영승용판매 부분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인 乙 등 219명은 회사를 상대로 '임시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는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乙 등 219명의 근로자들이 임시로 甲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음.

甲 회사는 위 가처분결정에 기해 乙 등 219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기는 했으나 이미 회사분할로써 직영승용판매 부분이 신설회사로 이전되어 乙 등 직영승용판매 부문에서 근무하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乙 등을 대기발령함. 乙 등은 '① 위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고, ②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러한 취지의 대기발령을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甲 회사를 상대로 휴업수당 지급 청구를 함. 변론 진행 도중 甲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짐. 丙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소송을 수계함.

2. 쟁점

휴업수당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3. 판시사항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비록 현실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한 대상(代償)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업수당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4. 해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이 실시된 경우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대한 휴업수당청구권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①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한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임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최신 판례 ■

[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피보험자 동의의 철회 가부

배성진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들은 원고들이 감사, 이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A 회사가 각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 보험계약, 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하였음.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들은 "원고들이 A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A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원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알고 이에 맞추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였으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에는 (i) 수익자 지정동의서 부분에 '회사의 대표로서 자금을 별도로 모으기 위함'이라는 원고의 수익자 지정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ii) 수익자 지정사유란에 '기타 경영지원', '기업체 임원' 등이 기재되었으며 원고들의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었음.

원고들은 퇴직 이후 A 회사 및 보험회사들에 대해 피보험자 변경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보험회사들은 계약상 피보험자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 당사자인 A 회사에 의한 중도 해지만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A 회사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요청을 거절함.

이에 원고들은 A 회사 및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 동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이후 금융감독원이 2010년 1월 29일 자로 개정된 생명보험표준약관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계약 체결 이후 언제든지 피보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위 개정 표준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2. 쟁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서면동의를 한 피보험자가 위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

3. 판시사항

- (1) 상법 제731조, 제734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2)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는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② 보험계약이나 서면동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③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④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고 하는 등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3) 이 사건의 경우 A 회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원고들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안인바, 원고들이 A 회사에 계속 재직한다는 점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意的 전제가 되는 사정이므로 원고들이 A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이상 원고들이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4. 해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731조 제1항). 위와 같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제731조 제2항, 제734조 제2항). 그런데 피보험자가 위 동의를 사후에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생명보험표준약관 개정 이전에는 보험약관에도 관련된 정함이 없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라는 요건하에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피보험자가 일방적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 문제는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판결은 위 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3) 이 판결에 따르면 대체로 회사가 재직 중인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위로금 지급 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해당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동意的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들이 피보험자 동意的 기초가 된 사정을 알

고 있을 것이 필요한지“에 관해 의문이 있는데(이 판결의 원심은 보험회사들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목적에 관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원고들의 계속 재직’을 동의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정으로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의 의사나 인식은 동의 철회의 가부와 무관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 최신 법령 ■

[공정거래]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박형삼 변호사 | 이병주 변호사

1.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14. 2. 14. 시행)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의 규제범위와 금지행위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개정 시행령이 개정 법 시행과 맞추어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1) 규제대상(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 ① **지원주체**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② **지원객체** : 총수 및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2) 금지되는 행위유형(시행령 별표 1의3)

-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을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다만, 정상가격과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 200억 원) 미만 제외
- ② **사업기회 제공** :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업기회를 제공해 준 경우 제외
- ③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고 이에 대해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다만, 상품·용역의 연간 거래총액이 거래상대방 매출액 12% 미만 & 200억 원 미만 제외

(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예외사유 (시행령 별표 1의4)

- ① **효율성 증대** : 다른 자와 거래로 달성할 수 없는 비용절감·판매증대·품질개선·기술개발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한 경우
- ② **보안성** : 다른 자와 거래 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 ③ **긴급성** : 경기급변·금융위기·천재지변·해킹·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나. 통행세 금지유형(시행령 별표 1의2 라항)

- (1)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2. 다운로드: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2월 4일자 보도참고자료」

[공정거래]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1.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14. 2. 14. 시행)

개정 하도급법에서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내용 구체화 및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유·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조건 구체화(시행령 제6조의 2)

- (1) 설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2)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 (3)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 (4)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 (5) 계약기간 중 하도급법 제16조의 2에 따른 단가조정요청권을 제한하는 약정
- (6) 기타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약정

나.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유·절차를 보완(시행령 제8조)

: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 2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한 보증금 지급의무 사유를 구체화

-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개시 신청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채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3) 수급사업자에게 상환부담이 있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
-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다운로드: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2월 4일자 보도참고자료](#)」

■ 최신 법령 ■

[금융]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채희석 변호사

그간 입법 과정에서 다소간의 진통이 있었지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커버드본드법')이 2014년 1월 14일 제정되어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커버드본드법은 은행의 장기조달을 원활케 함으로써 단기대출에 치중한 국내 가계대출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입법화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기초자산 중 주택담보대출의 DTI요건의 설정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어 입법과정에 2년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으로 일반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등 기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기존 은행채 발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주요 내용

커버드본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 법의 목적으로서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함(제1조).
- (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커버풀, Cover Pool)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으로 정의함(제2조).
- (3)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적격 발행기관을 재무건전성을 갖춘 국내은행과 정책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대통령령을 통해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은 주택담보대출채권, 국·공채, 선박·항공기 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 현금 등 유동성 자산 등으로 구성하되, 유동성

- 자산은 기초자산집합 평가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총채권액에 대한 기초자산집합 평가총액의 최소담보비율을 105% 이상으로 함(제5조).
- (5)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려는 금융회사 등은 발행계획과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100분의 8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 발행 후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 (6) 발행기관은 기초자산집합을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기초자산집합의 평가총액이 발행 잔액에 대한 기초자산집합의 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이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산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도록 하며, 기초자산집합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7)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발행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시인을 선임하되, 최근 3년 이내 발행기관의 특수관계인을 배제하며, 감시인의 해임사유와 재선임에 관해 규정함(제9조).
- (8) 발행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 등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감시인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권고 미이행 시 금융위원회가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9) 발행기관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기초자산집합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거나 채무자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파산절연(破産絶縁)의 효력을 규정함(제12조).
- (10)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소지자, 기초자산집합의 비용채권 등을 가지는 자는 기초자산집합으로부터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우선변제권으로 채권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도록 이중상환청구권에 관해 규정함(제13조 및 제14조).
- (11) 기초자산집합을 처분할 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및 저당권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

- (12) 발행기관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자산의 적격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하여 감시인 또는 우선변제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참고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MBS)과 관련하여, MBS 채권자에 대한 담보자산에 의한 우선변제권(제31조 제2항)과 다른 자산에 의한 변제권(제31조 제3항)을 명시함으로써 커버드본드의 발행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2010년 최초 발행 이후 그간 국내 및 해외에서 총 8건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해 왔습니다.

2. 커버드본드와 MBS 및 전통적인 담보부사채의 차이

커버드본드와 MBS 및 전통적인 담보부사채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¹

구분	커버드본드	MBS	담보부사채
발행주체	기초자산의 원 보유자	별도로 설립된 SPC	기초자산의 원 보유자
기초자산 계리	부내거래	부외거래	부내거래
파산절연	가능	가능	불가능
담보자산의 추가 및 교체	가능(Dynamic Pool)	불가능(Static Pool)	불가능(Static Pool)
트렌치 구분	불필요(단일채권 발행)	필요(선후순위·만기 세분화)	불필요

¹ 하나금융연구소, 부동산금융 현안시리즈 제11호(2014. 1. 9.) 참조

기초자산의 조기상환 발생 시	커버드본드의 조기상환 불필요	기초자산 현금흐름과 연계하여 조기상환 필요	기초자산 현금흐름과 연계하여 조기상환 필요
관련법	커버드본드법, 주택금융공사법	자산유동화법, 주택금융공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3. 다운로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최신 법령 ■

[보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배성진 변호사 | 허종 변호사

보험관계 업무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해당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에 관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계약자의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2014년 1월 14일 공포되었습니다. 위 개정 보험업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1)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제102조의3, 제86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90조 제2항)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보험관계 업무종사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①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게 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거나, ②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제102조의3). 한편 위 규정에 위반한 보험관계 업무종사자들에 대해 업무의 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6조 제2항 제3호, 제88조 제2항 제3호, 제90조 제2항 제3호).

2) 청약철회 관련 보험회사의 준수사항(제102조의4, 제102조의5)

청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제102조의4 제1항),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받은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하며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102조의4 제1항, 제102조의5 제1항). 또한 이 경우 보험회사가 청약자에게 청약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02조의5 제2항).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02조의4 제1항 단서).

3)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시 경찰청의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보 이용 근거 마련(제176조 제10항, 제177조)

보험회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경유하여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편 이와 관련하여 동 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제176조 제10항, 제177조).

2. 다운로드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 단신 ■

최승수 변호사, '한국게임법학회' 초대 회장으로 선임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가 2월 6일 게임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게임법학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한국게임법학회는 게임 등급분류, 게임 중독, e스포츠, 게임 아이템, 게임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게임 회사간 인수합병(M&A) 등 게임 관련 이슈 전반을 다룹니다.

[관련 기사]

- 법률신문 - '한국게임법학회' 출범(2014. 2. 10.)
- 디스이즈게임 - 한국게임법학회 출범, "게임과 관련된 법 연구한다"(2014. 2. 7.)
- 전자신문 - '한국게임법학회' 출범...초대 회장에 최승수 변호사(2014. 2. 6.)
- 인벤 - [취재] '한국게임법학회' 공식 출범, 게임 관련 법 연구 전문적으로 나선다(2014. 2. 6.)

■ 단신 ■

김성수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外



(법무법인 지평 김성수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가 1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년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구제 추진 업무 등 건강보험의 정상화에 관한 자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2010년부터 금연운동협의회 이사 겸 법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담배규제의 법적 문제와 대응과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발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가 1월 1일 고용노동부 법률자문 변호사로 재위촉되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의 법률자문 변호사로 노동 관련 법령 및 판례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률자문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가 지난 2013년 12월 28일 TBS 교통방송 '시사전망대' 2부에 9시 45분부터 약 12분간 출연하여 "노동격변 통상임금 판결..그 의미와 향후 전망은?"을 주제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관련 방송 듣기]

- TBS 교통방송 '시사전망대' - "노동격변 통상임금 판결..그 의미와 향후 전망은?"(2013. 12. 28.)

■ 단신 ■

임성택 변호사,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가 2월 4일 국회의원 안철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이 주최하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인 P&A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P&A'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 [에이블뉴스 -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위한 토론회 열려\(2014. 2. 3.\)](#)

■ 단신 ■

이근동 변호사, 안전행정부 고문변호사로 재위촉



(법무법인 지평 이근동 변호사)

이근동 변호사가 1월 1일 안전행정부 고문변호사로 재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 단신 ■

김영수 변호사, 2013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어 헌법재판소장표창 수여



(법무법인 지평 김영수 변호사)

김영수 변호사가 지난 2013년 12월 24일 2013년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어 헌법재판소장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김영수 변호사는 국선대리인으로서 충실한 서면작성과 성실한 변론참여 등 열정적이고 충실한 대리활동을 펼침으로써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이 선고되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 단신 ■

박성철, 박호경, 장품, 구나영 변호사 공동논문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위헌성」 '언론과 법' 제12권 제2호에 게재



박성철 변호사



박호경 변호사



장 품 변호사



구나영 변호사

박성철, 박호경, 장품, 구나영 변호사의 공동논문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위헌성」이 '언론과 법' 제12권 제2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논문]

- '언론과 법' 제12권 제2호 -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조항의 위헌성」